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 규정

제정 2012. 3. 1.
개정 2016. 3. 1.
개정 2017. 6. 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청강학원 정관 제39조의2 ①과 교원인사규정 제25조(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),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 4에 의거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(이하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원회 구성) ①위원회는 교원인사담당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7인 내외 교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교원인사담당부서장이 되며.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
③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위원회는 행정을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원인사담당자로 한다.

제3조(위원장 등의 임무)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(위원회의 운영) ①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. 출석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.

③위원 중 자신에 관한 심의 시에는 그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.

④제3항에 의한 재적위원이 있는 경우의 위원 수는 그 재적위원 수를 감한 수로 한다.

⑤위원회는 출석위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5조(기능) 위원회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임용동의에 앞서 정년까지 임용할 전임교원의 현직위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고,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.

1. 교육활동 및 연구, 제안 실적
2. 학교발전을 위한 업적 및 리더십 영역
3. 강의법 개선방안 및 Only one item
4. 취업률 향상에 대한 공헌 및 향후 방안 등

제6조(스쿨정년보장인사위원회) (삭제) (2017.6.1. 개정)

제7조(관계자의 회의출석 및 자료제출)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관계자의 회의 출석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8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필요사항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의 승인 후 시행할 수

있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(경과조치) 현 정년보장 교수는 본 규정에 의해 임용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